

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2 ~ 6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2. 9. 10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이 개정(2009.4.01.)되어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통합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업·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정함(안 제6조)
- 나.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(안 제3장(제13조부터 제24조까지)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2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2. 06. 13. ~ 7. 03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(4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”를 “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제14조에 따른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”를 “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농어업·농어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”로 한다.

제3장(제13조부터 제24조까지)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<u>친환경농업 육성법</u>」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u>제1조(목적)</u> ----- 「<u>친환경농업 육성법</u>」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u>제6조(친환경농업 실천계획)</u> ① ~ ② (생략)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면 <u>제14조에 따른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<u>제6조(친환경농업 실천계획)</u>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「<u>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/u>」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<u>거창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</u>-----</p>
<p><u>제3장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·운영</u></p>	<p><삭 제></p>
<p><u>제13조(설치)</u>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	
<p><u>제14조(기능)</u>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.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. 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.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.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자재공급 및 인증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.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7.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간의 업무연계 및 협력을 지원한다.</p>	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, 농축산과장, 농업소득과장, 농촌활력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</u> <u>2. 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출장소장</u> <u>3. 농업 관련 유관기관·단체의 대표자</u> <u>4.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자</u> <u>5.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</u> <p><u>제16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1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</u></p> <p><u>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<u>제18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사망,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	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9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<u>제20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</u></p> <p><u>②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주사가 되고, 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1조(심의사항의 처리)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2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23조(공청회 등의 개최)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24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은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

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제4조제1항 중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정함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비용추계는 해당 없음.

4. 작성자

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